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52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간판에 사용되는 색채로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항4호)
- 나. 입간판 재료를 '비철(非鐵)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변경
(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 다. 공공시설물 광고물 중 가로영상문화시설 단서 조항(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 삭제
(안 제10조제1항제2호)
- 라.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선착장' 추가
(안 제10조제1항제6호)
- 마. 조례 위임 사항이 아닌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조항 삭제
(안 제11조의2)

- 바. 창문을 이용한 전광류(동영상 변화가 없는) 사용 광고물을
‘상업지역 건물 1층’으로 제한한 규정 삭제(안 제17조제2항2호)
- 사.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기준 완화를 위한 ‘시범사업’ 조항
추가(안 제17조제4항)
- 아. 그 밖의 인용조항 수정(안 제2조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제6호)
및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법」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2. 13. ~ 3. 5.) 결과 : 의견있음(미반영)

※ 의견내용 : 가로영상문화시설 설치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상업용 미디어폴과 같은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가능성이 높고 빛공해, 도시미관 저해 등 부작용이 예상됨(제10조1항2호 관련)

※ 미반영 사유 :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및 설치·디자인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작성자: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이제인 (☎ 02-2133-193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제8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제17조제2항제2호”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료시에”를 “종료 시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단서 중 “디지털 광고물”을 “디지털광고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연립형 간판”을 “연립형간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6호 중 “비철(非鐵)금속”을 “금속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을 “가로영상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별표 1의 공원이용시설 중 제1호가목 내 선착장(「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리버버스를 위한 선착장에 한정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호”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호”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제11조제1항제3호”를 “제1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 건물”을 “건물”로,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을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옥외광고사업자 단체 또는 자치구 등으로부터 창문 이용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천·종이·비닐 등 유연성 원단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최대 4분의 1 이내로 한다.

2.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써 최대 1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건물의 벽면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 이용 간판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규격은 세로는 4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가로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료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
라 인증받은 설비의 신재생에
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
업지역에 한정하여 자정까지
할 수 있다.

가. ~ 다. (생략)

4.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
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
인 광고물등과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5. (생략)

④·⑤ (생략)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
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
다.

종료 시에-----
-----.

-----.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
법) ① -----

-----.

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영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
로 정하는 재료”란 비철(非鐵)
금속을 말한다.

②·③ (생략)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
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
관대, 교통정보안내판(영 제29
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
횡단보도 쉼터, 가로영상문화
시설(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
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
정한다)

3. ~ 5. (생략)

-----.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
----- 금속 등-----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가로영상문화
시설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생 략)

②·③ (생 략)

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5조, 제8조 제1항 제8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하되,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영 제35조의2에서 정한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된다.

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별표 1의 공원이용시설 중 제1호가목 내 선착장(「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리버버스를 위한 선착장에 한정한다)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2. 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계시대를 이용할 경우 이는 제1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은 지정계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3. 영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가로·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4.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된다.

②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

제11조의3(집회현수막) 단체나 개인이 법 제8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3(집회현수막)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호 -----
-----.

1.·2. (생략)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 관리기준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
야 한다.

1. ~ 5. (생략)

6.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제거를 하지 않은 현
수막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
4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 ① (생략)

② 목재·아크릴·금속재·디
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
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
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
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 관리기준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 제11조제1항제4호---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 또는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생략)

<신 설>

1. 건물-----

--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각 -----

-----.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옥외광고사업자 단체 또는 자치구 등으로부터 창문 이용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천·종이·비닐 등 유연성 원단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최대 4분의 1 이내로

한다.

2.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써 최대 1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건물의 벽면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 이용 간판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규격은 세로는 4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가로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선착장’ 추가
(안 제10조제1항제6호)
-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기준 완화를 위한 ‘시범사업’ 조항 추가 (안 제17조제5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선착장’을 추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대상 및 지원범위가 명확치 않아 재정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어려움
- 창문 이용 광고물의 시범사업은 시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이제인(2133-1934)